# 포천노곡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 (2021)



## 포천노곡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노곡초등학교(병설유치원 포함)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설치)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포천노곡초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본교 병설유치원은 1학급에 해당하므로 초등과 통합하여 운영한다.

### 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#### ※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설치

- 교원,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
- 외부위원(학부모 및 외부전문가) 비율이 50%이상 되도록 구성
- 임기 1년, 1회에 한해 연임 가능
  - ② 위원회는 교원 4인, 학부모 4인으로 구성하되, 교원 위원의 경우 교감 1인은 당연직으로 한다.
  - ③ 교원위원은 전체교직원회의 구성원 중 교원들에 의한 추천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.
  - ④ 학부모위원은 추천일 현재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.
  - ⑤ 위원장은 동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  - ⑥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회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- ⑦ 위원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- ⑧ 위원의 궐위가 발생할 경우 보궐 위촉 위원의 임기는 궐위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#### 제4조(기능)

-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가. 유. 초등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교시행계획
  - 나. 유, 초등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구체적인 평가대상자 및 평가자, 평가 내용・방법・절차・시기
  - 다. 교사능력개발평가의 평가(조사)문항 및 평가 양식의 설정에 관한 사항
  - 라. 평가 종류별, 평가 대상자별, 평가 영역별 평가자의 구성에 관한 사항
  - 마. 평가 관련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에 관한 사항
  - 바.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결과에 대한 소속 교원의 원자료 열람요청에 관한 사항
  - 사.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에 따른 능력개발 지원 계획 및 연수 대상자 등 추천에 관한 사항
  - 아. 단위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분석 보고서
  - 자.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제시한 사항의 심의 외에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  - 가.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의견 수렴
  - 나. 수업개선 및 생활지도 여건개선과 관련한 학교구성원들의 지원 요구 수렴
  - 다.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할
- 제5조(서약서 작성)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은 임기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6조(회의)

-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회의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회의내용을 교원위원 중 1인 또는 평가관리실무자가 기록하여 결과를 정리한다.
- 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부동수인 경우, 위원장이 최종표결권을 갖는다.

#### 제7조(평가관리자 등의 임명)

- ①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감을 평가관리자로 임명하여 업무를 수행케 한다.
- ② 학교장은 평가관리자의 업무를 분장하며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원능력개발 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평가관리실무자를 지정할 수 있다.
- ③ 평가관리자와 평가관리실무자는 비밀엄수 서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8조(평가관리자의 역할) 평가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며 평가관리실무자와 함께 평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.
  - 가. 교사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(안) 작성
  - 나. 교사능력개발평가 등의 진단 및 분석 보고서(안) 작성
  - 다. 평가에 필요한 각종 양식의 제작, 복사, 배부
  - 라. 평가자들의 평가 결과 수합, 통계처리, 보관, 분류 및 전달
  - 마. 평가 관련 회의, 협의회, 간담회 등의 계획 및 조정
  - 바. 평가를 위한 수업참관 관련 업무
  - 사. 학생 만족도 및 학부모 만족 조사 관련 업무
  - 아. 학교와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, 평가자와 평가대상 교사 간의 의사소통 촉진
  - 자. 기타 본 규정에 의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업무
- 제9조(규정의 개정) 동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. 6. 18. 부터 시행한다.